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특징: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통장

2. 거래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기본이자율 (2025.10.02 현재, 세전)	연 0.10%
이자산출근거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이자의 지급방법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예금과목	저축예금
가입대상	<p>실명의 개인 (1인 1계좌)</p> <p>※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금수급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특별연금 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수급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대상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p>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p>해당 :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p> 
세제혜택	<p>비과세종합저축 : 가능</p> <p>※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p> <p>※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p>
자료열람 요구권	<p>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p>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p>휴면예금 및 출연</p>	<p>편입 대상 아님</p>
<p>우대서비스</p>	<p>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불가] 2) 신한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p>
<p>우대요건</p>	<p>1) 대상고객 : 매월 말일자로 이 예금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2) 우대기간 :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3) 우대조건(전달 1개월간 실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긴급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 입금된 경우 ※ 이 예금 가입후 최초 3개월 경과월의 15일까지는 상기 우대서비스의 수수료 우대 항목을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함</p>
<p>입금가능자금</p>	<p>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정한 수급금,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또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만 입금 가능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7) 긴급지원금</p>

	<p>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9) 특별현금 급여비 10) 퇴직공제금 11) 아동수당, 영아수당 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 재난적의료비 15) 의료급여 16) 양육수당 17) 실업급여 18) 구직촉진수당 19) 산재보험급여 20) 대지급금 21)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22)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p>
<p>거래제한</p>	<p>1)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p>
<p>위법계약해지권</p>	<p>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p>

예금 해지 시 불이익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인용출처	해당없음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없음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만 입금됨에 따라 통장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 정보

기본이자율	연 0.10%	2025.10.02 현재, 세전
입금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의 보험급여, 특별연금 급여비,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만 입금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1억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 시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해야 함
은행의 상계	불가
양도	불가
담보제공	불가
유동성대출계좌	사용 불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간을) 완전히 지나간 시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